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증명서 발급 대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납부증명서 신청 및 발급의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1. ~ 1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납부증명서는 별표 2에서 정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75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행정안전부령 제30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중 “2024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11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 1. 1.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6(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생략) <신설> 행정안전부령 제175호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행정안전부령 제30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6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의 개정규정은 <u>2024년 1월 1일부터</u> 시행한다	제2조의6(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납부증명서는 별표 2에서 정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75호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행정안전부령 제30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 -----. ----- ----- <u>2025년 1월 1일</u>----- -----.

납부증명서 발급대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제2조의6 관련)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종류
1. 「궤도운송법」 과징금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과징금
3. 「도시가스사업법」 과징금
4. 「동물보호법」 과징금
5. 「모자보건법」 과징금
6. 「물류정책기본법」 과징금
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과징금
8. 「사료관리법」 과징금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징금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징금
11. 「석탄산업법」 과징금
12. 「소방시설공사업법」 과징금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징금
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과징금
15. 「위험물안전관리법」 과징금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과징금
17. 「정보통신공사업법」 과징금
18. 「축산물 위생관리법」 과징금
19. 「항만운송사업법」 과징금
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행강제금
2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

지바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발급신청)서

발급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납부증명서의 사용 목적	[] 대금수령	대금 지급자		
	[] 그 밖의 목적			
납부증명서 신청부수		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에 따라 발급일 현재 체납처분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
의

신청인(납부의무자)

(서명 또는 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유예의 명세						
유예종류	유예기간	부과연도	과목	납부기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산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에 따라 발급일 현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에 등록된 납부의무자의 체납정보를 확인한 결과 체납처분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1. 납부증명서 유효기간: 년 월 일

2. 유효기간 단축 사유:

이
호
지

발신명의 직인